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수서동, 하나빌딩) / Tel 02-567-1307, 070-4276-8659(실적관리) /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3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2 - 9호

시행일자 2022. 1. 6.

수 신 국토안전관리원장

참 조 건설품질관리실장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번호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적정성 검토 개선 요청

1. 국가 건설공사와 시설물 안전을 위해 진력하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제62조 10항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00조 3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 제56조에서 검토 대상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건설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건설안전 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 또는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지침’ 제57조에 ‘시공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 또는 점검결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부적정’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의 [별표8] ‘건설공사등의 별점관리기준’ 다.(1)의 안전점검 소홀에 따른 행정처분도 ‘정기안전점검 등의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정기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 「건진법」 제100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이하 ‘점검’)은 ‘지침’ 제23조 4항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 작성은 ‘지침’ [별표4] 1.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목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행령 제100조 8항에 의한 대가 기준으로 볼 때 2인 1조의 1일 점검대가에도 못 미치는 회당 100~200만원에 발주되고 있는 상황이며 귀원의 적정성 검토 내용과 같이 시공사가 별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점검기관’의 제출요청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작성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6. 우리 협회 산하 점검기관이 귀원에 확인을 해보니 지난해 말까지 160건 정도의 정기안전점검 검토 결과 ‘지침 제58조 3항 3에 해당되지 않는 점검이 ‘조건부 적정’도 아닌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하고 한 현장에 2건 이상을 판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첨 참조)

이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건진법」 해당 조항과 ‘지침’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①「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건설안전 환경변화에서 귀원과 시공사, 점검기관 간에 불필요한 법적책임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② 점검비가 회당 1~2백만원 밖에 안 되는 용역을 연 2회 “부적정” 평가를 내려 지침 제58조 7항에 따라 1년간 안전점검기관 등록 명부에서 제외되면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발주하는 ‘점검’에서 배제됨으로써 수주를 못하는 억울한 점검기관이 나오게 되어 최소 8인을 고용한 점검기관의 폐업으로 많은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③ 같은 용역사업자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은 처사입니다.

7.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과 처분의 형평성, 건설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점검기관과 우리 협회의 의견을 들어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며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가. 안전점검 결과 통보시 검토 대상 용역이 ‘지침’ 제56조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시

나. ‘지침’ 제57조 3항 3.에 따라 시공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점검결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적정” 판정을 해서는 안 됨.

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적정 대가기준 및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지침의 수립시까지 ‘지침’ [별표4] 1.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침’ 제56조에 해당하지 않

는 점검에 대한 평가 유보.

첨 부 : 안전점검결과 적정성 검토에 대한 협회 의견(토목, 건축현장 사례) 2부.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